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3서식] <신설 2017. 10. 19.>

## 경계설정합의서

대상토지				소유자				
읍 • 면	동ㆍ리	지 번	지 목	성 명 (기관·단체명)	생년월일 (등록번호)	주 소	전화번호	서명 또는 날인

합의내용

경계(면적) 설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## **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** 귀하

첨부서류 필요 시 약도 첨부